

2015.1.26

'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' 개정 요약 안내

1. 개정사유 및 시행일자

● 개정취지

- 규제개혁 발굴과제 추진내역 반영
-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표시방법 명확화

● 시행일자 : 15. 1. 30. (금)

2. 주요 개정내용

원산지 위반유형별 정의 조항 신설

원산지 위반유형 판정기준이 불명확하여 업무적용 시 논쟁의 여지가 있고 민원갈등을 유발하는 점을 반영함.

※ 위반 유형별(허위, 오인, 부적정, 미표시, 손상·변경)정의 조항 신설

고시 제 34조~38조 삭제, 위반유형별 사례 명확화

별표 4 ~ 별표8

적용법령별 이의신청 방법 명확히 구분

[현행] 적용법령에 관계 없이 원산지표시 위반 관련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관할 세관장에게 이의 신청

[개선] 관세법에 따른 통관제한 등 세관장의 처분은 관할 세관장에게 이의신청, 대외무역법에 따른 시정명령, 과징금 등 처분에 대하여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

2015.1.26

소비자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표시방법 명확화

▣ 원산지표시 글자크기 지정

[현행] 원산지는 잘 보이도록 표시해야 하나 글자크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수입업체와의 갈등 소지 상존

- 공산품은 형태가 다양하여 표시면적별 글자크기 지정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나,
- 농수산물 및 식품류는 포장형태가 일정하여 가능하며 국산품과 수입품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면적별 표시크기 도입 필요

[개선] 기본적인 글자크기 : 8포인트 이상

- 농수산물 및 식품류 (HS 제1류~24류, 25류) : 표시면적별로 원산지표시 크기를 지정하여 국산품 규정과 일치

* 50cm² 미만 : 8포인트 이상, 50cm²~3,000cm² 미만 : 12포인트 이상,
3,000cm² 이상 : 20포인트 이상

▣ 타 법령에 따른 한글표시사항에 원산지표시 허용 인정기준 명확화

[현행] 한글표시사항의 원산지 등 표시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와 일치하는 경우 적정으로 인정

[개선] 원산지(또는 제조국:국가명) 표시 글자크기를 최소 8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만 인정

☞ 글자크기 지정시기 시행시기 : 규제심사 등 고시개정 후 1년 유예